

부 대 항 소 장

부대항소인(원고, 피항소인) 〇〇〇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부대피항소인(피고, 항소인) ♦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손해배상(기)청구 부대항소

위 당사자간 귀원 20〇〇나〇〇〇 손해배상(기)청구 항소사건에 관하여 부대항소인(원고, 피항소인)은 위 항소에 부대하여 위 항소사건의 제1심 판결(〇〇지방법원 20〇〇. 〇. 〇. 선고 20〇〇가합〇〇〇) 가운데 원고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부대항소를 제기합니다.

부 대 항 소 취 지

- 1.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
- 2.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○○. ○. ○.부터 20○○.○. ○○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3. 소송비용은 제1,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
- 4.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부 대 항 소 이 유



추후 제출하겠습니다.

첨 부 서 류

1. 부대항소장부본

1통

1. 송달료납부서

1통

2000. 00. 00.

위 부대항소인(원고, 피항소인)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			,
제출법원	제1심 법원(민사소송법	제출기간	변론이 종결될 때까지(민/망www.
	제397조 제1항)		송법 제403조) * ****
제출부수	부대항소장 1부 및 상대 방 수만큼의 부본제출	관 할 법 원	※ 아래(1)참조
	<원심 및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각하결정>		
불복절차 및 기간	·즉시항고(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, 제402조 제2항)		
	·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444조)		
	<항소심 판결>		
	・상고(민사소송법 제422조)		
	·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, 제425조)		
비용	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1)참조		
	·송달료 : ㅇㅇㅇ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기 타	·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		
	소(附帶抗訴)를 할 수 있음(민사소송법 제403조).		
	·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		
	을 잃게 됨. 다만,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		
	보게 됨(민사소송법 제404조).		
	·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변경 한 경우에는		
	그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라고		
	볼 것이므로, 항소심이 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 청구를 인		
	용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님(대법원 2000.		
	2. 25. 선고 97다30066 판결).		
	·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		
	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		
	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,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		
	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		
	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함(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9므1596 등 판		
	결).		

※ (1) 관 할

- 1. 고등법원 관할 사건
 - 지방법원합의부의 판결(법원조직법 제28조 제1호)
- 2. 지방법원합의부 관할사건 :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

※ (2) 인 지

항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가액(소가)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1.5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함(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). 다만, 대법

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 공학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원 이상인 경우에 현금 납부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)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상소 및 재심 >> 상소